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2. 10.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영교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743호
- 나. 제출자: 성동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 1. 26.
- 라. 회부일자: 2022. 1. 2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개정 2021. 1. 12./시행 2022. 1. 13.)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개정 2021. 12. 16./시행 2022. 1. 13.)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연번	조례명	조문	개정내용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령 제35조 → 시행령 제37조	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령 제39조 → 시행령 제41조	의회사무국
		제2조제3항	시행령 제41조 → 시행령 제43조	
		제3조제4항	시행령 제41조 → 시행령 제43조	
		제8조제4항	시행령 제43조제4항 → 시행령 제46조제5항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50조 → 시행령 제52조	
	제11조	시행령 제46조 → 시행령 제49조 시행령 제47조 → 시행령 제50조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6조 → 법 제21조	감사담당관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법 제112조 → 법 제125조	총무과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법 제90조 → 법 제102조	총무과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1조	법 제142조 → 법 제159조	자치행정과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법 제8조 → 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 시행령 제10조	자치행정과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법 제4조의2 → 법 제7조	자치행정과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법 제144조 → 법 제161조	교육지원과
10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법 제9조 → 법 제13조	문화체육과
11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법 제140조 → 법 제157조	문화체육과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	제2조제1항 제3호	법 제104조 → 법 제117조	민원여권과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법 제134조 → 법 제150조	기획예산과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04조 → 법 제117조	기획예산과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3조	법 제39조 → 법 제47조	기획예산과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	법 제104조 → 법 제11조	기획예산과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법 제136조 → 법 제153조	지역경제과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80조 → 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78조	지역경제과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14조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지역경제과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조	법 제144조 → 법 제161조	지역경제과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9조 → 법 제13조	지역경제과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법 제142조 → 법 제159조	지역경제과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법 제142조 → 법 제159조	일자리정책과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법 제137조 및 제139조 → 법 제154조 및 제156조	세무1과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법 제142조 → 법 제159조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법 제159조 → 법 제176조	청소행정과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법 제142조 → 법 제159조	청소행정과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법 제142조 → 법 제159조	토목과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법 제104조 → 법 제117조	토목과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협조부서: 기획예산과 등
-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개정 2021. 1. 12./시행 2022. 1. 13.)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개정 2021. 12. 16./시행 2022. 1. 13.)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인용된 법령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괄입법 형식으로 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에 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 형식 및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